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개관 예정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관내 기관·단체·기업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혜택을 부여

○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 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에서 설치·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규정(안 제2조제1호, 별표3)

○ 성주별고을풋살장, 선남강변리틀야구장 사용료 규정 추가(안 제10조, 별표 1)

○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(안 제13조, 별표 2)

-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·단체·기업체 30%감면

○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 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(안 제14조)

- 5일전 사용허가 취소 시에만 사용료의 50% 반환에서 차등반환으로 변경 → 7일전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의 100%, 3일전 사용료의 80%, 1일전 50%, 사용 개시 후에는 남은 일수의 30% 반환으로 개선

○ 기타 용어 수정

4. 참고사항

○ 관련근거 :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,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

○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○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(기획감사실-11172(2019.11.6.))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지원과-43901(2019.10.25.))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'19. 11. 7 ~ 11. 27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며,

○ 성주 별고을 풋살장, 선남 강변리틀 야구장의 사용료 규정의 추가,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·단체·기업체의 사용료 30% 감면, 사용허가 취소 시 남은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반환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,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